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사망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되어
발생된 소득세는
상속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는
납세의무 있음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 2024.02.20

■ 질 의

- 쟁점법인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3.@.@. 현재 주주임원단기채권 100백만원 및 해당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100백만원(주주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를 이하 "가지급금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 이는 질의인의 직계존속이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AA(이하 "피상속인")에 대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는 자임

○ 한편, '23.00.0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을 비용(대손상각비)처리하였으며

-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호나목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9에 따라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예정임

질 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피상속인)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

의 성립 여부 및 상속인이 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지 여부

■ 회 신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

■ 질 의

- 양도당시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보유기간 중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 회 신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3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

질 의

-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시 이월결손금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3222, 2023.12.14

질 의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게 출연하는 경우 출연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회 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3.02.15. 이후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